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87호로 2021년 10월 8일 차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 라.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 마.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약사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10. 7. ~ 10. 12. / 6일 간)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 상위 법령등과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등에 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조항이 아닌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직접적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의약품 등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2020.5.19. 제정하고 2021년 10월 현재 37개 약국을 지정,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1개 약국(여의대방로 197, 신길7동)이 참여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 중랑구, 노원구 3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개소의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노원구는 시비 지원금 외 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 및 지정,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에 따른 업무 수행과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준수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 이용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 ○ 집행부서 의견

- 공공야간약국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시비지원으로 2020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으로, 우리구는 현재 약국1개소가 참여중이며, 필요시 서울시 추가지원도 가능하나, 현재까지 희망 약국 없음.
- 심야시간대 의약품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24시간편의점)이 관내 330여 개소가 운영중으로, 우리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야간에 증상이 심하여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9개소가 있어 응급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갖추어져 있음.

- 현재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사업효과성 미비로 사업 종료시, 구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구비 부담(연 4,000만원/개소)이 있는바, 향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집행부서 의견을 참고해 본다면

희망약국이 없어 서울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국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 제5조제4항에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 약국의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바 서울시에서 사업 종료시 구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 검토결과

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통해서 증상의 경증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 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2 보건의료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